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급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20.2.21. 응급의료과-850)
3. 그러나 최근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병상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증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탄력적 운영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응급의료 제공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19 대응 탄력적 운영 기준 >

기 존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시설·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영 허용</li> <li>- 별도의 승인 없이 응급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탄력적 운영 실시</li> <li>* 상황 종료 후 사후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시설·인력·장비의 탄력적 운영 허용하되,</li> <li>- 탄력적 운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b>종별 허가권자*에게 사전 보고</b></li> <li>* 권역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고</li> <li>- 단,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의 시설·인력을 탄력적 운영(변경) 시 <b>종별 허가권자* 사전 승인 필요</b></li> <li>* 권역센터는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거쳐 복지부 사전 승인</li> </ul>

4. 탄력적 운영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현재 기준(12.31.) 탄력적 운영 현황을 조사하오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붙임 2 양식을 작성하여 '21.1.10.까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탄력 운영의 종료 시기는 방역 상황,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종료시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내원 등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방역 시행\*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 20.2.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9-4판( ' 20.12.7)

- 응급실 인력의 자가격리 등 정상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도 최대한응급실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 동원 등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또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12.14.) 됨을 안내드리니 응급환자 진료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기관 탄력적 운영 요청 양식  
2.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 조사 양식(7월 기준 조사 현행화)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립중앙의료원장, 17개 시도, 대한응급의학회장

행정사무관 **구미정** 응급의료과장 **장영진** 2020.12.30.

협조자

시행 응급의료과-575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557 팩스번호 044-202-3930 / [imkmj1@korea.kr](mailto:imkmj1@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